

[별표23]

장소사용요금표(제47조 및 제53조 관련)

구 분	사용면적 (㎡)	기본요금 (1시간 이내)	초과요금 (1시간당)	장소사용 신청기한
건물내부	100미만	250,000원	125,000원	장소사용일로부터 20일 전까지
	100~149	500,000원	250,000원	
	150~199	750,000원	375,000원	
	200이상	1,000,000원	500,000원	
건물외부	1,650미만	180,000원	90,000원	
	1,650~2474	270,000원	135,000원	
	2,475~3,299	360,000원	180,000원	
	3,300이상	540,000원	270,000원	

※ 비고

1.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대상 건물은 장소사용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
2. 건물내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은 국가유산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
3. 건물 내부 장소사용 시 사용 면적에 전각 및 그 권역을 포함하여 허가하고, 장소사용요금은 내·외부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함
4.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
5. 제27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28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은 산정요금의 100%를 가산